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속기)

○ 선발예정인원 : 2명

○ 근무부서 : 의사담당관(기록팀)

○ 담당업무 : 의회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보조 등

2. 근무조건

구 분	내 용
계약기간	· 2026. 8. 26.~2026. 12. 31.(약 4개월, 1명) · 2026. 8. 26.~2027. 1. 27.(약 5개월, 1명) ※ 최종합격자 성적순 희망 근무기간 배정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 주 5일(월~금) 근무
보 수	· 월 2,478,840원(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 전 금액) · 명절상여금 20만원(설·추석에 재직 시) · 시간외근무수당 18,030원(지급사유 발생 시) ※ 2026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

3. 응시자격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6. 8. 11.(화)~8. 14.(금)	전자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18.(화)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6. 8. 20.(목)	
최종합격자 발표	2026. 8. 21.(금)	충청남도의회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
채용예정일	2026. 8. 27.(목)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개시

※ 채용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지 또는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6. 8. 11.(화) 13:00 ~ 8. 14.(금)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rjy420@korea.kr)

○ 제출서류

연 번	제출서류	비 고
1	응시원서 1부	모든 응시자 제출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7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	
8	속기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접수확인 : 접수 당일 응시번호 문자 발송(18시 이후 접수 건은 익일 발송)

※ 기존 접수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접수자로 간주

6. 채용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부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및 양식 준수 여부 평가

○ 적격 여부만 판단, 적격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시험

○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2. 채용분야 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1. 속기분야 경력이 긴 자 2. 한글속기 자격증 등급이 높은 자

※ 1, 2호 모두 같을 경우 재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2명(예비합격자 : 2명)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 취소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7. 유의사항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변경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시험을 진행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없는 경우(적격자 없는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전자우편 제출),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는 5일 이내 파기합니다.
단,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합격 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2개월 뒤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제11조(계약의 종료)
1.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041-635-5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